**【참고】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**

## 1 사업명

○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

○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

○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,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“사치재”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

- 사업 취지,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, 작성
- 지자체의 특성 및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작성

<< 예시 >>

▶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(x) →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

▶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(x) → 장애인·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

## 2 사업개요

### 1.1 사업 목적

○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

○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

- 사업 취지,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

<< 예시 >>

▶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

-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·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,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

### 1.2. 서비스 대상

#### 1) 서비스 수요 추계

○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

-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

<< 예시 >>

▶ 인터넷 과몰입 아동·청소년 치유서비스
-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·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
  · 1단계 : 6,675명(57,837가구/1.3명×24.2%×62%)
    ☞ 00지역 3-14세 아동 수 : 57,837명, ☞가구당 아동수 : 1.3명(05년 통계청)
    ☞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: 24.2%
    ☞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: 62%
  · 2단계 : 827명(6,675가구×12.4%)
    ☞ 아동·청소년 인터넷중독률 : 12.4%('10년, 행정안전부)

### 2) 선정 기준

○ 사업 취지, 서비스 욕구,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

○ 이용자의 연령, 건강상태, 장애유형,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

-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

<< 예시 >>

▶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- 전국평균가구소득 100% 이하의 가구원 중 0~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·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,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

### 3) 선정 우선 순위

○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,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(선착순 등은 지양)

<< 예시 >>

▶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
- 1순위 :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
- 2순위 : 학교장·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·행동 문제,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

## 1.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
□ **기본적인 서비스 종류, 정의, 범위, 서비스제공시간,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(필요시 그림, 도식 등을 활용)**

○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

□ **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(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→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(×))**

□ **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, 필요성·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**

☞ (예시)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(EAP)서비스 → 단순 관광·여행서비스(×)

<< 작성 예시 >>

▶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- 서비스 제공 주기 : 주1회, 1회당 50분
- 서비스 내용
  · 심리상담 및 놀이·언어·인지·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
- 제공방법 :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
- 제공 절차
  · (1단계)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
  · (2단계)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  · (3단계)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

## 1.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

### 1) 서비스 가격

○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,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, 적정 가격 산정

-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,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·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
-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, 손해·배상보험,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

○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

※ 시장 미성숙,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,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

-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, 적정 이윤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

☞ (예시) 서비스 가격 : 11천원( 【월평균 예상 매출액(7천만원/7개월) ÷ 필요인력 수(100명/10명) ÷ 100만원】 × 적정이윤율(1.1) )

### 2)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□ 정부 지원액

○ 월 단위 “정액”으로,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

- 다만 사업 성격,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☞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

○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

○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(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)

□ 본인부담금

○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

○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

- 사업 여건 변화,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

○ 본인부담금 비율

-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가격의 50% 내외로 지자체에서 자율 설정하되,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(10%), 차상위-평균소득 50%(20%), 평균소득 50-100%(30%)으로 설정
- 이용자 특성,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(☞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)
-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·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

### 3) 바우처 관리

#### □ 개인별 판정유효기간

○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(서비스 개시월)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

- 서비스 개시월 :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

※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,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

☞ (예시) 2016. 2.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. 3월임

-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

○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

-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1회(12개월+12개월)에 한하여 재판정 가능

#### □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

○ 바우처 형태 : 전자 바우처

○ 바우처 성격

- 바우처 생성 주기 :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(1회, 1개월마다, 2개월마다 등)
- 총 생성횟수 : 이용자 지원기간 ÷ 생성 주기

○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(예: 여름방학, 겨울방학 등)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(예 : 7~8월, 11~12월)

## 1.5 서비스 제공

### 1) 서비스 제공 (가능)기관

○ 기관성격(공공, 비영리, 민간), 기관명, 소재지, 제공인력 수 등

○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

○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“비고”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, 방법 등을 기재하고, “현금·현물 추가투자확약서” 제출

○ 복지관,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,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

○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

**2)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**

**□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**

○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

-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

○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

- 월 평균 이용자 수 ÷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

○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

- 해당 자격소지·교육이수자,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
- 자활 근로,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

  ☞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

  ☞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

  ☞ 단,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
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

○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

-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
-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·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

  ☞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, 先 현장투입-後 보수교육 가능

**1.6. 성과 목표 및 지표**

**1) 자체 성과지표**

**□ 성과목표, 성과지표,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**

○ 창출된 일자리 수,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

○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,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~2개 추가 제시

☞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·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

<< 예시 >>

▶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

| 성과 목표 | 성과 지표 | 성과달성 목표치 |
|---|---|---|
|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| 아동 정서순화 정도 | 10% |
| ② 고용 창출 | 신규 고용인력수 | 100명 |
| ③ 시장화 촉진 | 추가 서비스 구매액 | 총 매출액의 10% |
|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| 서비스 만족도 | 만족이상 80% |

### 2) 성과지표 측정방법

□ 제시된 “각각”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

<< 예시 >>

| 성과 지표 | 측정 산식 | 성과측정 계획 |
|---|---|---|
|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| (12개월 이용아동 점수-서비스 제공전 점수)/서비스 제공전 점수 |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,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|
| ② 신규 고용인력수 |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|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,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|
|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| (제공기관 총매출액-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)/제공기관 총매출액 |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|
| ④ 서비스 만족도 | 조사기관에 의뢰, 서비스 만족도 조사 | 2개월마다 조사 실시,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|

## 3 사업 타당성 검토

### 2.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

□ 기본 방향(☞ “Why” 추진해야 하는가?)

○ 사회적 욕구·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,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작성

□ 고려사항

○ 국가·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·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

○ **정부 투자 효율성·높은 우선 순위**

-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,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
- 서비스 시장·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,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

○ 국내외 사례,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

### 2.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

□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(내용, 대상,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)

○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

### 2.3 사업 내용의 타당성

**□ 기본 방향**

○ 이용자 선정 기준,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

- "누구를 대상으로", "누가", "어떤 서비스를", "어떻게" 제공할 것이며, 서비스 제공을 통해 "무엇을" 기대할 수 있는가?

□ 고려사항

○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·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

○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

○ 서비스 내용, 제공량,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

○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,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

○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(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, 서비스 질 평가 계획) 등

○ 시장 가격, 유사 서비스 가격,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,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

○ 정부 지원액,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☞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%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

○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

### 2.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

**□ 기본 방향**

○ 사업 성격,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

**□ 고려 사항**

○ 이용자 참여 저조(수요 부족)시 대책

- 서비스 홍보 강화,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, 선정기준 완화, 신청 기한 연장, 본인부담율 인하 등

○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

- 분기별·반기별 이용자 모집,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,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

○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